

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5조 (약관·부속약관 변경)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<u>변경약관</u>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약관이 변경된 직후</u> 게시합니다. 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권고(명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.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<u>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,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(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)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	① ----- ----- ---<u>변경내용(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, 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을</u> ----- -----<u>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</u>-----. 1.~4.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(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)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하여야 합니다. 단,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,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</u>	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공시 내용 강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개별통지 의무 강화

현행	개정(안)	비고
③ 금융회사는 <u>제1항의</u> 통지를 할 경우 “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<u>통지</u>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<u>통지</u>하여야 합니다. ④ 채무자가 <u>제2항의</u>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	<u>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</u> ③ ----- <u>제1항의</u> 게시 또는 <u>제2항의</u> ----- -----<u>제1항의</u> 게시 또는 <u>제2항의</u> 통지를----- ----- ----- -----<u>게시 또는 통지</u>-----. ④ ----- <u>제1항의</u> 게시 또는 <u>제2항의</u> 통지----- ----- ----- -----.	